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5. 12.(수) 배포</p>			
보도일	2021. 5. 13.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·방송·통신 5. 12.(수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		
담당과	교육시설안전팀	담당자	팀장	김관영 (☎ 044-203-7131)	
			사무관	김기필 (☎ 044-203-6299)	
			사무관	황영덕 (☎ 044-203-7135)	

**「교육시설안전 인증」, 「교육시설 안전성평가」
고시·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**

- ◆ 시설 및 실내외 환경 안전 등 '교육시설안전 인증'을 통한 교육 시설 안전성 검증
- ◆ 학교 밖 건설공사도 착공 전 '교육시설 안전성평가'를 의무적 실시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후속 조치로 「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」 및 「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」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.
 -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.
 - 아울러,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·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,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,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「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인증 대상은 유치원, 학교, 학생수련원,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이며 최소 5년 주기(단, 최우수등급은 10년)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- 인증 등급은 최우수, 우수 2개 등급이며 시설안전, 실내환경 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각 기준별 세부항목 심사를 통해 등급별 점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다.
- 교육시설의 종합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기준별 취득점수가 기준의 80% 미만인 경우는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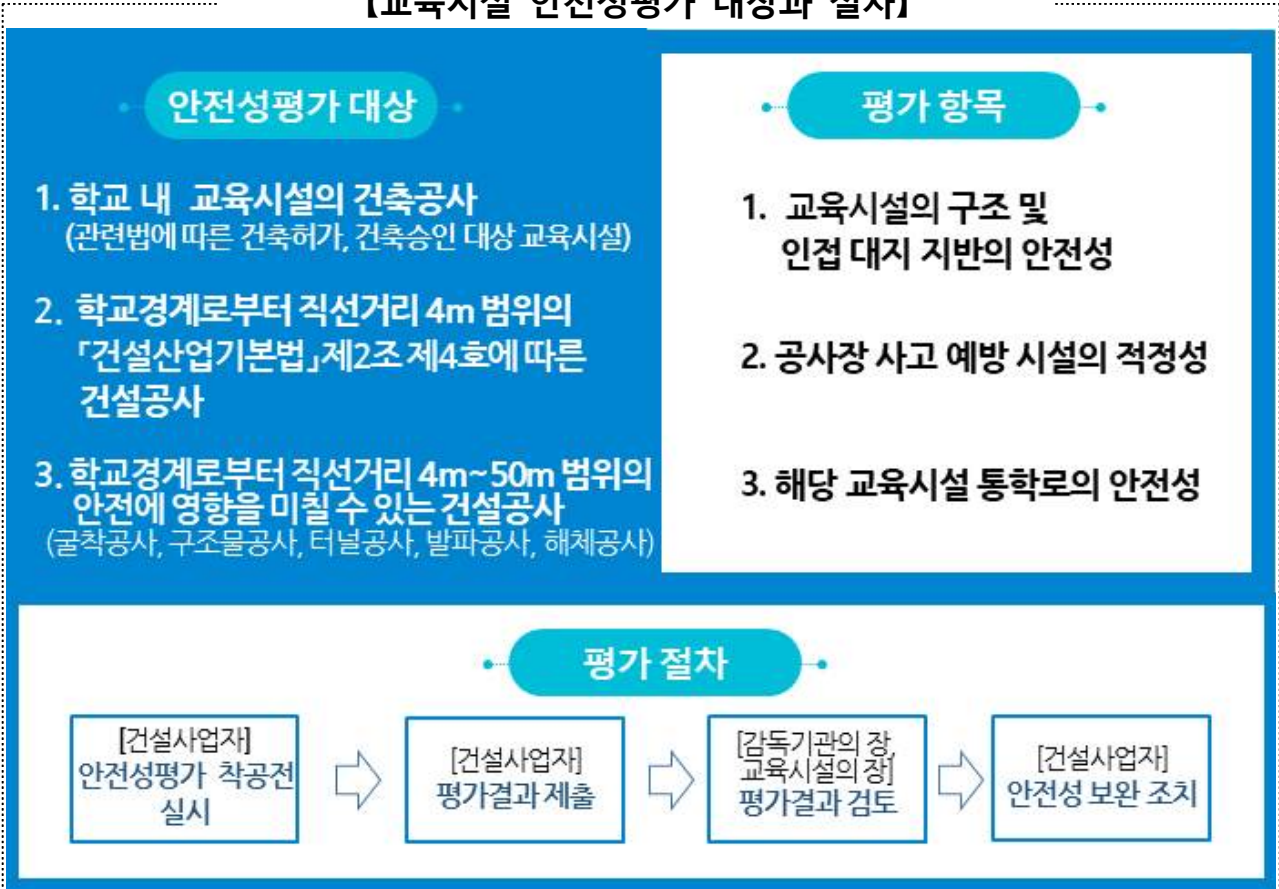
【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과 기준】



- 「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 이내 건설공사와 50M 이내 굴착, 구조물,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착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.
 - 건설사업자가 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학교·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평가 실시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,

- 교육시설의 상태 분석과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 조치, 공사장 가설 및 화재 안전관리, 통학로 안전 및 공사차량 교통처리 방안 등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.

【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과 절차】



□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“교육시설안전 인증과 안전성평가를 통해 학교의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- 【붙임】** 1. 「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」 제정안
2. 「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」 제정안